

#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의 안 번호	1678
-----------	------

2024. 04. 29.  
주택공간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# 1. 제안경위

- 2024. 4. 1. 허훈 의원 발의 (2024. 4. 8. 회부)

### 2. 제안이유

-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되었으나  
현행 조례에는 아직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마을공동체 관  
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삭제함(안 제2조제1항제9호 삭제).
- 나.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이미 폐지된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 
지원 조례」와 관련된 시설들을 삭제함(안 제44조제6호 삭제)
- 다.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  
(안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).
- 라. 마을공동체의 지도·감독 조항을 삭제함(안 제48조 삭제)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오정균)

- 이 개정안은 '22년 12월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폐지<sup>1)</sup>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'마을공동체' 용어를 정비(삭제)하려는 것으로 2024년 4월 1일 허훈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 개정사항 중 특이사항은 없음.

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	02-2180-8204
입 법 조 사 관 최지현	02-2180-8216

1)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(의안번호 제11-275호)('22.12.30.)